

**3****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명확화(법§10의6②)****① 개정개요**

개정 전	개정 후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(원칙) 사실상 취득가액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(예외) 시가표준액</p> <p>- <u>개인에 한하여</u>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표준 명확화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(예외) 시가표준액</p> <p>- <u>개인과 법인 모두</u> 사실상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</p>

**□ 개정내용**

- 법인의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 
없는 경우,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

※ 법인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목변경 전·후의 시가표준액  
차액으로 과세표준 적용(부동산세제과-2669, '24.8.2.)

**□ 적용요령**

- 개정 규정은 현행 운영을 명확화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